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미혼규정 삭제〉

-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26호)
-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27호)
-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2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회부일자
1	221822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2026-04-10	2026-4-13
2	221822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2026-04-10	2026-4-13
3	221822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2026-04-10	2026-4-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

해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Ⅲ. 검토의견

1. 사관학교 입학자격 중 미혼규정 삭제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미혼’으로 규정하여 기혼자의 경우 사관학교 입학에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u>미만의 미혼</u> <u>자일</u>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제3조(입학자격) ----- ----- -----. 1. ----- <u>미만일</u> ----- -----. ----- ----- -----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 자격) ----- ----- -----.

구분	현행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 안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1. ----- <u>미만일</u> ----- -----. ----- ----- ----- ----- -----.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17세 이상 21세 <u>미만의 미혼</u> 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 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 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 ----- ----- ----- ----- --. 1. ----- <u>미만일</u>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생략)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이하 생략)

□ 또한, 현행 미혼 규정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희생이 반드시 미혼자이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가정을 갖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충성심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의 기혼자 배제규정은 17세에서 21세 사이의 결혼을 한 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을 것으로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

□ 이에 개정안은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1) 한국법제연구원,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2017. 12.

□ 현행법상 입학자격의 미혼 규정은 2004년 1월 20일 시행 법률 제7087호 일부개정 시 신설되었음.

사관생도는 4년간의 생도생활을 통해 군인정신과 인격함양, 군인으로서 체력단련 및 군사훈련, 대학과정에 요구되는 학업을 병행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정신적인 강인함이 요구됨.

이에 2004년 일부개정 시 단체생활을 하는 사관생도의 특성 상 성공적인 생도생활 및 적기 임관을 위해 생도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으로 ‘미혼’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의 사관학교들도 입학자격으로 미혼을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들에 대하여 사관학교 운영의 특수성²⁾을 고려하였을 때 임신·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점, 관련 사유로 휴학이 장기화될 시 소위 임관연령 상한(29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미혼 요건으로 인한 입학자격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사관생도의 특수성과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방부는 사관학교 운영의 특수성으로 합숙 생활, 군사훈련 등 강도 높은 신체·정신적 인내를 요하는 점, 기수별 통합교육 및 적기 임관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